

 영광군	<h1>옥당골소식</h1>	제534호 2020.05.25.(월)
--	----------------	-------------------------

♡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

**목 차**

**I. 군정 소식**

1. 다동이 가족 행복여행 .....	3
2.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4
3. 임산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 .....	5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6
5.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7
6.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	8
7.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 .....	10
8. 2020년 주민규제입증요청제 .....	11
9.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12
10.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4
11. 지점번호 지킴이 모집공고 .....	16
12.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17
13. 광산세무서 개청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안내 .....	18
14.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19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
16.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	21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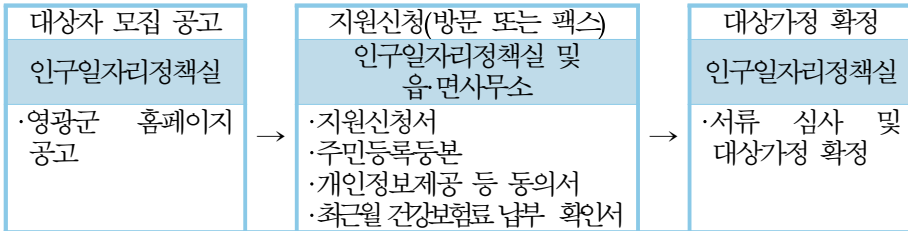
**II. 기타 소식**

17. 2020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안내 .....	22
18.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	23
19. 2020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안내 .....	23
20. 영광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	24
2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25
2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26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	27
24.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재배계약 추진 안내 .....	28
2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	29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	30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31
3.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	32
4. 우리지역 「오존주의보 정보」 문자로 받아보세요 .....	33
5.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다시 조사합니다. ....	34
6. 2020년 5월 국정홍보만화 I .....	35
7. 2020년 5월 국정홍보만화 II .....	36

## 다동이 가족 행복여행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동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 제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20. 6. ~ 10월중(일정조정 가능)
-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
- 여행기간 : 2박 3일
- 장 소 : 국내(제주도 일원 예정) - 장소변경 가능
- 내 용 : 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가족체험, 기념앨범 제작 등
- 지원신청 및 절차



※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주소변경 포함, 세대원 전부 주민등록 번호표기, 세대구성 사유 및 구성일자, 변동사유 등 포함)

※ 부모·자녀가 반드시 동행하고 여행 불참자 발생 시 후순위로 선정

- 접수기간 : 2020. 5. 11.(월) ~ 5. 29.(금)  
※ 접수시간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팩스 061-350-5622)  
※ 팩스 발신 후 정상수신 확인 반드시 필요하며 미확인 시 접수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6. 12.(금) 개별통보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부부 중 한 명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 이내
  - 2년간 3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50만원, 3회 150만원)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신 청 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초과시 지원불가)

- 지원절차
  - 혼인신고 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통장 지급
-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이혼 또는 지원대상자 관외 전출시 지원중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2, 350-4673)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원(1인당 1회 한함)
  - 택시 및 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
- 지원신청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 출산팀
  - 제출서류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지원절차
  - 임신 사실 확인서 지참 →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 → 임신부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 교통카드 발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 원 방 법
첫째아	500	500만원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1,200	1,200만원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씩 36개월
셋째아 ~ 다섯째아	3,000	3,000만원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씩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	3,500만원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씩 59개월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됨

- 변경 적용 : 2020. 1. 1.출생아부터(이전 출생아는 종전 조례 적용)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지원신청 및 절차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읍면) → 다음달 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 송부 →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통장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검진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도내 병의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 지원내용 : 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1인1회
- 검진항목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항목 중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li> <li>•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li> <li>•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li> <li>• 소변검사(당뇨, 단백뇨)</li> <li>•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li> <li>•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li> <li>•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li> <li>• 소변검사(당뇨, 단백뇨)</li> <li>•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li> <li>•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li> <li>•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li> <li>•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li> </ul>

- 지원절차  
○ 검진안내→ 검진실시→ 검진비용청구 신청서 작성(대상자)→ 서류검토 및 지급확정→검진비 지원(인구일자리정책실)

### □ 신청서류

구 분	신 혼 부 부	예 비 부 부
공통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추가	⑥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⑥ 예식장계약서 1부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672, 350-4673, 350-4813)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 긴급지원으로 고용안정 도모

###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4. 8. ~ 8. 10.(4개월)
- 지원대상 : 2020. 4. 6. 이전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중 무급 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등

구 분	특고·프리랜서 등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고·프리랜서 등 종사자 중 <b>고용보험 미가입자</b> ※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보형설계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점검인등</li> <li>▪ (근로자) <b>2. 23. 이후</b> 휴업 등으로 <b>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b>전면 또는 부분 중단 또는 생산량·매출액 감소</b> 등으로 2. 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100인 미만 사업장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 우선 지원</li> <li>▪ (근로자) <b>2. 23.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b>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li> </ul>

-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및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최대 100만원)
- 지원기간 : 2개월
-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수당 지급
-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지원시기가 다를 경우 가능)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가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4. 8. ~ 8. 10. \* '20.8.10.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근로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구 분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신청) 근로자 주소지 읍면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5)</li> <li>-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6)</li> <li>-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9)</li> <li>- 보조금 수급 관련 협약서(서식10)</li> <li>-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신청일 전 3개월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li> <li>- 휴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li> </ul> </li> <li>▪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용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li> <li>- 무급휴직 확인서(서식2)</li> <li>-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9)</li> <li>- 보조금 수급 관련 협약서(서식10)</li> <li>-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li> <li>- 월급명세서(신청일 전 3개월분)</li> </ul> </li> <li>▪ (근로자 신청) 근로자 주소지 읍면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용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3)</li> <li>- 무급휴직 확인서(서식4)</li> <li>-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9)</li> <li>- 보조금 수급 관련 협약서(서식10)</li> <li>-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li> <li>- 월급명세서(신청일 전 3개월분)</li> </ul> </li> <li>▪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li> </ul>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061-350-5453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및 내용

시술 종류 및 횟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 횟수)			정 부 지 원		군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횟수 동일)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이내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내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내
		4~5회	20만원		

※ 정부·군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술 시작일 20. 1. 1.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횟수에 한하여 매 회 시술종류 및 기준대로 지급  
(이전 시술자는 종전대로 지원)

○ 정부지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의료기관 시술 전 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자격 판정 필요

○ 군비 추가지원

- 시술별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정부지원 해당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우선 적용 후 군비 차액 지원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군비 추가지원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명, 시술기간, 차수, 임신여부 반드시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치료기간이 의사소견서 상의 시술기간과 동일)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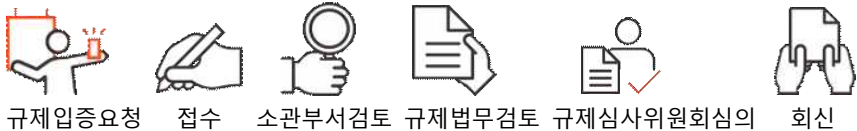
□ **지원절차**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 완료 → 서류 검토 후 지급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완료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서류 검토 후 지급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4813, 350-4673, 350-4672)

## 2020년 주민규제입증요청제 운영

- 규제입증요청제: 군민이나 기업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
- 요청방법: 영광군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규제개혁 신고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
- 업무처리 절차: 주민이 입증요청한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60일 이내 결과를 회신



규제입증요청 접수 소관부서검토 규제법무검토 규제심사위원회심의 회신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업량 : 10가구
-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

구분	사업대상	(연)소득기준	대상주택	구입시기	비고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맞벌이) 8천 5백만 원 이하 (외벌이) 7천 만 원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면적 100㎡ 이내	2019. 12월 ~2020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 예정자 포함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면적제한 없음		

※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대출잔액(최초 신청 시) 기준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1억 원 이상	15만 원(18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만 원(120만 원)
5천만 원 미만	5만 원( 6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 6.~8. 28.(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2020. 3. 30일 이후 발급된 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출서류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⑦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 예정자)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업량 : 30가구
-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조건 :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전세주택(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대출잔액(최초 신청 시) 기준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1억 원 이상	15만 원(18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만 원(120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5만 원( 6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 제출서류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 ⑥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1부.
- ⑦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1부.
- ⑧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1부.
- ⑨ 부부 소득 확인서류 각 1부.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 ‘지점번호 지킴이’ 모집공고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산악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에 사용되는 국가지점번호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지점번호 지킴이’ 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국토정보공사장

1. 모집인원: 300명 내외

2. 주요역할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오류 및 국가지점번호판 멸실·훼손 신고

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필요 지역 제안

다. 국가지점번호 대국민 홍보, 활용사례 전파 등

※ ‘지점번호 지킴이’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추후 소정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지점번호 지킴이 참여 신청서 1부.

나. 참여대상: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

다. 제출기간: 2020. 5. 11.(월) ~ 5. 29.(금)

라. 제출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명주소사업단 우편 또는 전자우편

마. 제출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부 국가지점번호 담당자 앞(이메일: lx0305@lx.or.kr)

4. 선정결과 발표: 2020. 6. 12. 예정 (개별통보)

※ 선정방법: 서류전형(등산동호회 산악대장 등 활동가 우선 선발)

※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26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영광군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방문을 통해 현장 청취 후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기간: 2020. 3월 ~ 12월
- 추진단: 11명(전담관, 규제부서, 사업부서, 전문가, 상공인)
- 대상: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 규제애로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 등
- 내용: 기업체 및 소상공인, 군민의 규제애로 직접 청취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건 의: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1-350-5716,5717
- 운영절차

규제건의 및 발굴	현장방문	규제해소	결과회신
- 유관기관 및 단체 (상인회, 건축사 협회, 직능단체 등)  - 기업 관련(투자, 입지 등) 부서민원	- 규제현장 방문, 직접 문제점 확인  - 규제피해 당사자, 전문가 등 종합적 의견 수렴	- 자체 해결방안 검토 (적극 법령 해석 포함)  - 법령 재개정 필요 시 협의 요청 (→ 행안부)	- (원칙)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신  * 처리 지연시 최종 결과 회신기한 연장 (최장 1월 이내) 안내
-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 업계 규제 전반 파악	개별기업/시장/상가/ 산업단지 등 현장 방문	시급한 과제는 개별 안건 부처협의 추진 (행안부 사전 공유)	- (행안부) 부처협의, (각부처) 수용여부 검토 및 회신 * 분기별

## 광산세무서 개청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안내

### 광산세무서 개청

- 개 청 일 : 2020. 4. 3.
-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하남동)
- 전 화 : 062-970-2200 ○ 사 이 트 : <https://g.nts.go.kr/gws>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 개 소 일 : ' 19. 10. 28.
- 위 치 : 영광읍 물무로2길 61(군청 별관 1층)
- 처리업무 : 국세, 지방세 관련 제증명 동시 발급, 신고·상담, 사업자등록 처리,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등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전 화 : (국세) 352-6202~3 (지방세) 350-5518
- 팩 스 : 352-6211

※ 광산세무서 영광출장소 통합 운영

## 202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대 상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가타소득)
- 신고기한 : 2020. 5. 1. ~ 2020. 6. 1.(1개월)
- 과세표준 : 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2% 초과누진세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접수, 방문신고
- 납부방법 : 납부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현금지급기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 (기존) 6월 1일까지 신고 · 납부
  - (변경) 6월 1일까지 신고 후, 8월 31일까지 납부
- ※ 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 납부기한 내 무납부 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부과
  
- 5월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위 치 : 군청 별관 1층(국세 · 지방세 통합민원실)
  - 방문대상 : 단순경비율대상자(F, G유형), 단일종교인소득자(Q, R유형)
  - ※ 방문신고 시에는 우편발송된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방문

☎ 문의 :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50-55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20.2.21.일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허위계약 금지

□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2020.2.21.시행)

항 목	기 존	변 경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계약체결일 ~60일 이내	계약체결일 ~ <b>30일 이내</b>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	<신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등 확정된 날로부터 <b>30일 이내 신고 의무</b>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 금지	<신설>	-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처벌 - 허위계약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

- 감면세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
- 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감면내용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재산세 감면(최대 50%)
  - 임차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하여 3개월 평균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시 감면
- 신청기간 : 2020. 4. ~ 6. 30.(화)
- 접수처 : 재무과 세외수입과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61-350-5539) / 접수확인 필요
- 제출서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거래 통장 입금내역 사본(인하 전 및 인하 후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약정서 사본(신청일 기준 이후 인하 적용시)
  - 임차인의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요)

문의사항 :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3, 350-5393)

## 2020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지원

- 지원기간 : 2020. 1. 1.~11. 30.
- 지원대상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2019년)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 지원내용 : 2020년 영광사랑카드 매출 수수료 0.5%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상반기 : 4. 1.~5. 30. (2개월) → 2020. 1. 1.~5. 31.까지(6월 지급)
    - 하반기 : 10. 1.~11. 30. (2개월) → 2020. 6. 1.~11. 30.까지(12월 지급)
    - √ 상반기 신청 사업체는 하반기까지 자동 지원 (하반기 지원 불가)
    - √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미 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①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분) → 군청 별관 1층 영광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증빙가능 서류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www.cardsales.or.kr)의 2019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매입내역 조회) 등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내역
      - 기타 국세청 발급 서류 등
    - ⑥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사업주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452)

##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전에 기여

- 신청기간 : 2020. 4. 27.~6. 30.
- 지원대상 : 300가구(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 사업내용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447) 및 읍면사무소

## 2020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타이머록 보급으로 안전한 가스사용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27.~6. 30.
- 지원대상 : 283가구(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노인성질환자 등)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심한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록) 무료 설치
- 신청문의 :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350-5447) 및 읍면사무소

##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영광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경영안정 지원

### □ 추진개요

- 가. 신청기간 : 2020. 4. 7. ~ 5. 29.
- 나. 지원대상 : 영광군 소재 소상공인
  - 영광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제외대상 : 시행성 업종, 유흥주점, 택시종사자, 태양광발전업 등 (소상공 용자제의 업종)
- 다.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라.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지급(6월중)

### □ 신청접수 방법

- 가.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투자경제과
- 나. 신청대상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다. 제출서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li> <li>○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부가치세 수입금액증명</li> <li>○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li> </ul>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작물재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보험입니다.

### I. 사업개요

- 가입기간 : 2020. 2. 24. ~ 11. 27.(보장기간 1년)
- 가입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유기농인증농가가 가입 시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

### II. 보험품목별 판매기간

품 목	판매기간	품 목	판매기간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꽃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24~11.27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29~6.12
		감자	7월~8월
		참다래	6월~7월
버섯작물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2.24~11.27	콩	6월~7월
		마늘	10월(난지) 10월~11월(한지)
벼, 사료용 벼	5.11~6.26	인삼	10월~11월
밤, 대추, 감귤 (‘대농’사과대추)	4.27~5.15	양파	10월~11월
고추	4.20~5.22	오디,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11월~12월
고구마	4.27~6.12	밀	10월~11월

※ 문의 : 영광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부서 ☎ 350-4847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신청기간: 5. 1.~6. 30.(2개월)
- 지원대상: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및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농지)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등

###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요건 8개 기준 모두 충족 시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100~205만원)

###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 소농직불금: 0.5ha 이하(세대 모든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 □ 접수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 신청서류

- (공동)공익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서
- 증빙자료(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등) \* 필요 시

※ 문의사항: 영광군청 농정과(☎350-5383)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산모 포함)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연 48만원 (보조 80%, 자담 20%)  
 - 9만6천원 자부담 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  
 - 1회 공급한도 2 ~ 6만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입)
- 신청서류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그 밖의 임신·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친환경농산물 공급 절차

사업신청 (연중)	대상자 확정 (주1회)	꾸러미 주문 (연중)	꾸러미 공급 (연중)
임산부 → 읍·면 → 군	군 → 읍·면 → 임산부·공급업체	임산부 → 공급업체	공급업체 → 임산부
농협몰에 가입 후 위 신청서류를 읍·면에 제출 (신청 시 임산부 본인의 농협몰 아이디 필요)	임산부 및 공급업체에 확정 대상자 안내	임산부가 자부담금을 공급업체에 납부하면, 공급업체에서 48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포인트를 활용해 꾸러미 상품을 선택주문(월 2회)	공급업체는 임산부가 주문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친환경농산물 배송

※ 공급업체(공급처) : 호남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www.nonghyupmall.com](http://www.nonghyupmall.com))

※ 문의사항: 영광군청 농정과(☎350-538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재배계약 추진 안내

주요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 ① 재배계약 : 2020. 5. 1. ~ 5. 31.까지
- ② 대상품목 : 고추, 대파, 양파
- ③ 지원대상 : 해당품목 1,000㎡ 이상 계약재배 농가(최대 1ha 지원)
- ④ 재배계약 : 읍·면장, 지역농협장, 농식품부고시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최근 3년 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하여야 함.
- ⑤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지원품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차액 지원
  - 지급기준 :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었을 때
  - 최저가격 : 매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지원제외 : 농가 임의 처분량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
    - 발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체결한 면적
    -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 최저가격 지원신청 및 지급
    -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차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농협 또는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의 해당품목 출하 증명서류 첨부
    - 출하증명 서류에는 농가별·품목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업체별 판매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문의 : 영광군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350-4841 / 4836 / 5581)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부과대상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광군에 등록된 자동차
- 납부대상자 및 납부기간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부과)
  - 부과기준일 : 2019. 12. 31.
  - 부과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부기간 : **2020. 3. 16. ~ 2020. 6. 30.**

(기존 2020. 3. 31. → 6. 30.로 3개월 연장)

- 납부방법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 간단e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 스마트뱅킹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공과금 수납 가능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후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납부(전국 금융기관, 도시환경과 상시 신청)
    - 3월 중 연납신청·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감면혜택

□ 문의사항 : 영광군 도시환경과 ☎061-350-5334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2020-192호, 2020. 2. 6.)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임

### □ 안전교육 이수기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홈페이지
(사)한국크레인협회 (정원규)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3, 대화빌딩 3층 (전화 02-522-1507, 02-6959-1518·1528·1538 /FAX 02-858-1508)	2020.2.6.	www.cranes.or.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박재영)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96, 국립관 드림밸리스 7층 (전화 02-741-8183, 02-420-0106~7 /FAX 02-420-0108)	"	www.kspeed.com
(사)안전보건진흥원 (조철호)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 3층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	www.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윤여송)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	www.csha.or.kr
(사)건설기계개발연맹 사업자협의회 (이주성)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9 3층 (전화 042-523-8050/FAX 042-523-8051)	"	edu.kungi.kr

\* 전문교육기관 별 강의 개설일자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 가입기한

- 기존 가입시설 :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20. 7. 6.)까지

##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5월 6일부터는  
생활속거리두기  
실천해주세요!



### 개인방역

#### 5대 기본수칙

-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보조수칙

- 1 마스크 착용
- 2 환경 소독
-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건강한 생활습관

### 집단방역

#### 5대 기본수칙

-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보조수칙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 우리지역 「오존주의보 정보」 문자로 받아보세요.

(자료제공: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 ☎ 061-240-5372)

-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시스템」에서 우리지역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발령시 문자로 수신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는 현재 **4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오존경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문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접속방법) <https://air.jihe.go.kr> 입력 또는, 검색창에 “전라남도 대기질 정보시스템” 입력 접속 후 알림 서비스 신청 → **대기오염경보 신청**

(전화신청)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 ☎ 061-240-5371~2로 신청

### 어떤 사항들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우리지역 **미세먼지와 오존경보 발령시** 문자나 팩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는 전라남도 다른지역 대기질 정보와, 과거 우리지역 대기정보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22개 시·군 전체에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기오염발령으로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다시 조사합니다.

“접수는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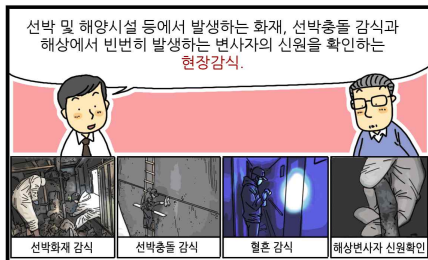
(자료제공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담당관 ☎02-6124-7531)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하시는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  
 △ 홈페이지 : [www.truth2018.kr](http://www.truth2018.kr)  
 △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mailto:truth2018@korea.kr)  
 △ 민원전화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전화 02-6124-75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경찰 과학수사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412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개원 연기, 돌봄 부담을 분담으로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282